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23
----------	------

2024년 6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 1. 제안이유

- 최근 민간예식장 폐업으로 결혼식장 예약난이 심화되고, 스프레드, 피로연 등 결혼식 고비용으로 인해 예비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 결혼식 종합 지원 사업 추진 중임.
- 그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여성플

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예비신혼부부 욕구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으로 조성하고자 함

- 이에 2024 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1)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
    - ▶ 서울여성플라자 : 지하 3층, 지하 5층(연면적 22,520㎡)
    - ▶ 서울가족플라자 :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14,710㎡)



서울여성플라자



서울가족플라자

- 근거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주요사업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의 운영·관리 등

(3) 추정개요

1) 추정예산 : 1,999,846천원

※ 총 출연금액 : 19,123,798천원 (기정 출연금액 : 17,123,952천원 포함)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7. ~ '25.2.
- 사업위치 : 서울여성플라자 지상 1층 국제회의장(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 규 모 : 약 810m<sup>2</sup>
- 사업내용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 조성

## 3) 추경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1,999,846천원
- ▶ 설계 및 감리비 : 111,166천원
- ▶ 개보수 공사비 등 : 1,888,680천원

##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예산조치 :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sup>1)</sup>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sup>2)</sup>에 따라 사전 절차로서 여성가족재단의 출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출자·출연 사무명
-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 이사회 회의록
- 7. 결산 보고서
-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그 적용대상이 되고 예산 심의에 앞선 예산편성 단계에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된 것으로 2016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임.

- 또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에 따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사회 회의록, 결산보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제출되었음.

##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개요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3)</sup>를 근거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해 양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임.
- 주요 사업으로 ‘양성평등 정책개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및 폭력 대응체계 운영활성화’, ‘서울아이 돌봄기관 인프

###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5.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6.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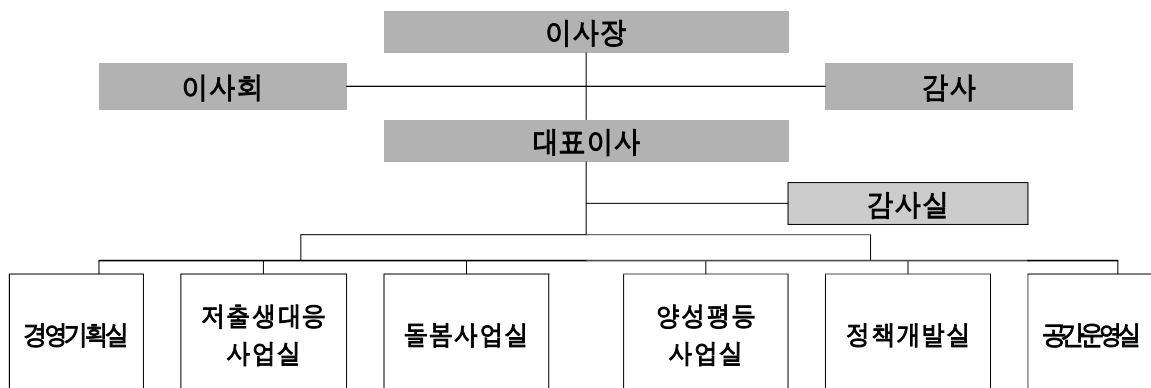
라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일·생활 기반 구축 및 운영활성화’,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 공간 운영’ 등이 있음.

- 2024년 5월 현재 여성가족재단의 운영 미션과 비전, 조직 및 인력, 주요시설 현황,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미션과 비전>



### <조직 현황 : 7실>



### <인력 현황>



(단위 : 명, 2024.5.기준)

구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한시 정원)	기능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정원	171	1	3	6	32	34	26	14	1	60
현원	175	1	2	5	27	27	39	13	1	60

- 2024년 총예산은 383억원으로 2023년 억원 대비 49억원 증가(14.9%)하였으며, 출연금은 2023년보다 2억7천7백만원 증가(1.6%)한 171억원임.
- 총예산의 주요증액 사유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비롯한 수탁기관 운영비가 34억원 증가(65.3%) 하고 ‘기타 수입’ 과 ‘이월 잉여금’, ‘대행사업수입’을 포함하여 자체수입이 12억원(11.2%) 증가하였으나 출연금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6%(2억7천) 증가함.

### <2024년도 예산 내역>

- 수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증감률)
계	33,327(100.0%)	38,300(100.0%)	4,973(14.9%)
출 연 금	16,847(50.5%)	17,124(44.7%)	277(1.6%)
자 체 수 입	11,215(33.7%)	12,474(32.6%)	1,259(11.2%)
사업운영수입	63(0.2%)	55(0.1%)	△9(△13.8%)
<b>시설운영수입</b>	<b>970(2.9%)</b>	<b>890(2.3%)</b>	<b>△81(△8.3%)</b>
기 타 수 입	862(2.6%)	1,042(2.7%)	179(20.8%)
이월 잉여금	1,484(4.5%)	1,836(4.8%)	352(23.7%)
대행사업수입	7,835(23.5%)	8,652(22.6%)	817(10.4%)
수탁기관 운영비	5,265(15.8%)	8,702(22.7%)	3,437(65.3%)
거점형 키움센터	2,678(8.0%)	2,757(7.2%)	79(2.9%)
서울여성공예센터	2,272(6.8%)	315(0.8%)	△1,957(△86.1%)
서울형 키즈카페	314(0.9%)	492(1.3%)	178(56.6%)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	5,138(13.4%)	5,138(100%)

- 지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증감률)
계	33,327(100.0%)	38,300(100.0%)	4,973(14.9%)
사업예산	15,705(47.1%)	16,444(42.9%)	739(4.7%)
일반관리비	12,357(37.1%)	13,154(34.3%)	797(6.5%)
수탁기관 운영비	5,265(15.8%)	8,702(22.7%)	3,437(65.3%)
거점형 키움센터	2,678(8.0%)	2,757(7.2%)	79(2.9%)
서울여성공예센터	2,272(6.8%)	315(0.8%)	△1,957(△86.1%)
서울형 키즈카페	314(0.9%)	492(1.3%)	178(56.6%)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	5,138(13.4%)	5,138(100%)

- 한편 최근 3년간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운영실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형 안심돌봄체계 구축’ 면에서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 사업에서 22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보이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 사업전반의 운영실적 제고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정책개발 및 성과 관리	36개	36개	35개
	정책활용도 제고	303.85%	319.05%	371.43%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	일·생활균형 컨설팅 기관수	55개	60개	68개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14건	16건	17건
	성인지 정책 개선 이행률	38.87%	49.80%	58.49%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콘텐츠 개발	11건	10건	11건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16개	21개	42개
	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	2,323명	2,646명	9137명
	돌봄관련 컨설팅 및 상담	5,009건	5,389건	2133건
	안심돌봄 체계 구축 연계협력 참여기관	28개	48개	62개

- 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4)에 따라 관리위탁<sup>5)</sup>하여 그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공간마련과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운영시설 개요>**

구분	서울여성플라자	서울가족플라자	
위 치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규 모 (면 적)	지상 5층, 지하 3층 (연면적 22,520㎡)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14,710㎡) (경제정책실 분임관리공간 (3,247㎡) 제외)	
건립기간	1999.11 ~ 2002.6	2017.12 ~ 2020.10	
주요 시설	대관 공간	국제회의장, 아트홀 '봄', 시청각실, 아트컬리지 등	다목적홀, 교육장, 세미나실, 푸드스튜디오, 아 동동반공유사무실 등
	사무 공간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단체) 사무실, NGO 활동공간, 성평등도서관 등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 사무실(거점2호 우리 동네키움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편의 시설	아기쉼터, 휴리운지,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	엄마아빠VIP존(3호,4호), 서울형 키즈카페, 식 당, 커피전문점, 옥상정원(텃밭), 주차장 등
공유재산 운영방식 (기간)	관리위탁 (2021.1.1. ~ 2025.12.31.)	관리위탁 (2020.6.1. ~ 2025.5.31.)	

- 현행 성과지표가 예년과 동일하지 않아 이전 연도와의 절  
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략적인 사업단위별 목표 15개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 5월말 기준, 목표치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업 등(정책개발 건수, 현장컨설팅, 공간프로그램  
참여 등) 은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5)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을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임.

## <2024년 주요 성과지표>

### 주요 성과지표

단위목표	지표	목표	실적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개발	정책 개발 및 성과관리	35건	4건
	정책활용도 제고	470.9%	'24년 하반기 집계 예정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및 폭력 대응체계 운영 활성화	폭력예방 콘텐츠 개발	4종	4종
	양성평등정책 개선율	64.3%	51.17%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피해지원	20,000건	10,729건
서울아이 돌봄기관 인프라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36건	20건
	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	7,695명	3,917명
	현장 맞춤 컨설팅	2,183건	738건
지속가능한 일·생활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일·생활균형 컨설팅 이행율	60%	추진중
	일·생활균형 컨설팅 및 일자리 연계 참여기업	195개	68개
	교육 및 사업 참여자 일자리 연계	135건	추진중
	지속가능한 일·생활기반 구축 콘텐츠 개발	12건	6건
미래지향적 가치 기반의 책임경영 강화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1,650명	449명
	공간·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88점	95.42점
	공간 이용 콘텐츠 개발	6건	2건

### 3 출연에 대한 타당성

-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sup>6)</sup>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sup>7)</sup>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적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여성가족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고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동 재단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며,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비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20	18,088	13,859	76.6%	55.7%
2021	20,371	15,030	73.8%	8.4%
2022	25,080	15,465	61.7%	2.9%
2023	33,327	16,847	50.6%	8.9%
2024	38,300	17,124	44.7%	1.6%
총액	135,165	78,325	57.9%	-
평균	27,033	15,665	57.9%	-

- 최근 5년 간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한 예산규모는 총 783억원으로, 한해 평균 156억원(2020년~2024년, 5년 평균)정도인 바, 재단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출연금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연금 지급에 대한 효과성과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의 비중(76.6%→44.7%)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편성, 수탁기관 운영 등의 예산은

용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 준비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것임.

- 본 출연동의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4년 기출연금 171억 4천9백만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19억 9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출연예산(안) 191억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예식장 활용을 위한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함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회의장 개보수 소요예산 총 18억 8천만원으로, 개보수 공사 13억 9천만원, 무대·음향 등 설비가 4억9천만원임.

〈표 1〉 서울여성가족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세 부 내 역
계	19,149,640	17,149,794	1,999,846	
공공운영비	25,842	25,842	-	
출연금	19,123,798	17,123,952	1,999,846	√ 서울여성플라자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 1,999,846천원 ◦ 공사비 1,880,680천원 ◦ 설계용역비 96,294천원 ◦ 감리용역비 14,872천원 ◦ 웨딩업체 등 자문회의비 8,000천원 (20만원×10명×4회)

- 이에 서울시는 제591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개최를 통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공간개선 설계용역’ 설계비를 포함한 용역비에 대해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를 받은 상태임.

※ 설계용역산출 개요

- 용역명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공간개선 설계용역
- 용역내용 :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공간개선(리모델링)
- 규 모

-- 건축물의 공간개선 범위

- ① 1층 면적 약 810㎡ ※ 건물 전체 규모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22,520㎡
- ② 서울시 대표 공공 음식점 조성을 위한 공간조성(비내력벽 철거, 신설) 및 인테리어 설계
- ③ 건축분야(바닥, 벽, 천장) 및 설비분야(기계·전기·소방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
- ④ 결혼식, 토론회, 세미나 등 대규모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 설비(조명, 영상, 음향 설비 등)

- 국제회의장은 2002년 6월 준공 이후 서울시민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교육, 행사 등에 대관을 통해 공간을 활성화 하고 운영수입을 통한 세입확보 등에 기여하고 있음.
-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24.5) 국제회의장 대관현황은 344건으로 대다수 교육과 회의 등의 목적으로 월 평균 21건으로 55,095명 이용하였고, 대관 수입은 1억 4,977만원임.

〈표 5〉 연도별 국제회의장 대관 이용실적(24.5기준)

구분	대관 건수(단위:건)				대관수입 (단위:천원)	이용인원 (단위:명)
	교육	행사	회의	합계		
2023년	70	89	76	235	104,179	37,390
2024년	25	28	40	93	59,600	17,705



※ 국제회의장 시설개요

- 조성연도 : 2002.6월 ※ 준공 후 22년 경과
-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지상 1층
- 규 모 :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22,519.96㎡ 중 지상1층 약 810㎡
- 수용인원 : 최대 450명 수용 가능 ※ 책상 사용 시 250명
- 주차대수 : 총241면, (가족플라자) 130면+(여성플라자)111면
- 공간구성 : 행사장(무대 포함), 대기실, 무대조정실, 부속실(창고 등)
- 용 도 : 대규모 행사(회의,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 대관공간



국제회의장 내부



국제회의장 정문



국제회의장 준비실(신부대기실)



국제회의장 무대조정실

- 결혼 장려 문화조성과 예비부부 지원이라는 정책적 시의성은 인정되나 국제회의장을 공공예식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작년 서울시 공공예식장의 이용건수가 28개소에서 29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 공공예식장 이용수요가 충분한지 예식공간으로 적정하여 주차나 식사 제공 등의 편의 제공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종합 검토 의견

- 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개발,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플라자 및 공간사업 등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제고와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용도 변경에 따라 활용도와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923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최근 민간예식장 폐업으로 결혼식장 예약난이 심화되고, 스프레드, 피로연 등 결혼식 고비용으로 인해 예비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 결혼식 종합 지원 사업 추진 중으로,
- 나. 그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예비신혼부부 욕구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으로 조성하고자 함
- 다. 이에 2024 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단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규모 : 지하 3층, 지하 5층(대지 6,488㎡, 연면적 22,519㎡)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나. 주요사업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등

## 다. 추정개요

1) 추정예산 : 1,999,846천원

※ 총 출연금액 : 19,123,798천원 (기정 출연금액 : 17,123,952천원 포함)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7. ~ '25.2.

- 사업위치 : 서울여성플라자 지상 1층 국제회의장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 규 모 : 약 810 $m^2$

- 사업내용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 조성



### 3) 추정예산 산출 근거

- 추정 요청액 : 1,999,846천원

▶ 설계 및 감리비 : 111,166천원

▶ 개보수 공사비 등 : 1,888,680천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이정우(☎ 2133-5010)